



2013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건축부문 대상작 「산청 읍수원」

목 차

■ 건설관련 소식 1

- 경상남도, 4급이하 정기인사 실시
- 2014년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및 관계자 협의회 개최
- 2013년 건설공사 관계 유공자 표창
- 국토교통부 주관 2013년 도로정비 우수기관에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
- 도민행복주택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 가야문화권 특정지역에 아라가야의 중심지 함안군 포함
- 20세기 폭스사 엔터테인먼트 총괄부사장 테마파크 예정지 방문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에 날개 단다
- 국내 최초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첫 삽'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건립 공사"착착" 진행
- (주)한국화이바, 함양일반산업단지 2014년 본격가동
- 의령군, 2014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66동 추진

■ 지식정보 11

- 흥준표 경상남도지사 취임 1년 돌아본다
- 새해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지역균형발전 추진한다

- 조선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마련
- 14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 건설공사대금 체불, 불공정 해소센터가 해결
- 신규 국책사업, 유사사업 사후평가자료 활용해야
-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부적격 협의업체 6,161개사 적발
-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
- 어린이 체험시설 '산청읍수원' 한옥 대상 수상
-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 이제 그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제2013-808호)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개정 고시(제2013-516호)
-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진다

■ 입법예고 및 법령해석 23

■ 신기술 정보 30

■ 건설기술심의 현황 31

■ 계약심사 현황 32

■ 기술인 나눔 정보 32

경상남도, 4급 이하 정기인사 실시

▶ 건설방재국 총49명 승진 및 전보 발령

경남도는 갑오년 새해 1월 3일 자로 과장급 및 5급 이하 공무원 56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연말 실·국·본부장 및 부단체장 인사발령 후속으로, 승진 62명, 전보 333명, 파견 및 파견복귀 125명, 전·출입 14명, 신규 13명 등 총 5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건설방재국은 지난 12월 26일자로 박우식 건설방재국장이 부임한데 이어 직급승진을 포함하여 9명의 승진, 전보 40명으로 총 49명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건설지원과장에 강병철 서기관, 도로과장에 이채건 서기관이 유임되었으며, 치수방재과장에 송병권 서기관, 도로관리사업소장에 김윤곤 서기관이 각각 부임하였다.

건설방재국내 승진자 9명은 모두 업무추진력과 도정기여도를 인정받아 임용되었으며, 전보자 또한 능력과 업무 추진력을 겸비한 적임자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다.

이번 인사는 열심히 일하는 도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향후에도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이 계속될 방침이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건설지원팀당 (055)211-4615



2014년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및 관계자 협의회 개최

▶ 심의수요 증가에 따른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노력

경남도는 지난 12. 2. ~ 12. 27.(27일간)까지 2014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발주청별 심의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사업 및 심의내용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적정성,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등 기술형 입찰공사의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실시설계 적격평가, 용역비 2.3억 원 이상의 설계 및 감리용역의 PQ, SOQ, TP의 적정성 심의이며,

수요조사 결과 실시설계 14건, 입찰방법 3건, 설계 및 감리용역의 PQ, SOQ, TP 31건, 총 48건으로 증가한 심의수요 반영 및 사업의 적기집행을 위해 월 1회 개최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보다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주요법령 개정사항 및 위원회 운영 계획, 청렴교육 등을 내용으로 발주청 관계자 협의회를 1월 중 개최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 정기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기술심의위원 및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한 해촉 및 보궐위촉이 있었으며, 해당 위원 현황은 도 살과 홈페이지 및 건설정보 홈페이지(<http://gnci.gsnd.net>)에 게재하였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4623

2013년 건설공사 관계 유공자 표창

- ▶ 건설공사 품질확보, 공사현장 안전문화 정책 및 건설기술향상 공로



경남도는 12월 26일 올해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건설기술발전에 기여한 건설공사 관계 유공자 민간부문 수상자 1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표창은 2004년 제정된 '경상남도 건설공사 현장점검반 운영규정'에 따라 분기별 정기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에 '우수 건설인'을 선발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기술향상을 유도하고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표창대상은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시공업체 관계자,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책임감리원, 현장점검에 참여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인 전문가들로 발주청의 자체평가와 도의 확인평가를 통하여 선정했다.

평가결과 건설공사 시공 분야에는 (주)연산 종합건설 권순창 부장을 비롯해 현대건설(주) 장창은 부장, 삼성산업개발(주) 최희진 부장, 흥한건설(주) 박호섭 대표이사, 우황건설(주) 장일식 부장, 대창건설(주)강동완 차장 등 6명

이 수상했으며, 건설공사 책임감리 분야에는 (주)수성엔지니어링 허일용 상무, (주)한성개발공사 정근용 과장, 동부엔지니어링(주) 홍용진 부장 등 5명, 전문가(건설기술심의위원) 분야에는 (주)우리이엔지건축사사무소 김성률 대표, (주)회덕기술공사 노경배 대표, (주)천진엔지니어링 박상주 대표, (주)신화 김형성 대표, (주)소마E&C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태호, KB건설안전연구원(주) 조용관 전문위원 등 6명이 수상했다.

한편, 현장점검반은 올해 대형건설공사 454개소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지사정 258건,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등 96건을 처리한 바 있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3



국토교통부 주관 2013년 도로정비 우수기관에 선정

- ▶ 기관표창 수상 및 우수기관 지원금 7천만 원 받아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로정비 평가에서 지난해 우수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국도 1,519km를 비롯해 지방도 2,160km, 시·군도 5,863km에 대하여 재포장 및 포장도 보수 21,046㎡, 교량·구조물 정비 295개소, 배수로정비 276개소, 차선 도색 2,583Km, 노건정비, 안전시설 등을 정비함에 따른 것으로,

도내를 찾는 관광객 및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방도 부문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년 1월 국토교통부장관의 기관표창과 함께 우수기관 지원금 7천만 원도 받는다.

도로정비는 매년 여름철 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 정비,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자재 및 장비 점검, 교통사고 위험요인 사전제거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춘·추계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시·군별로 도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10월 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재정비 및 현장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고 평가결과 정비실적이 우수한 밀양시, 의령군 등 6개 시·군에 대해서는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자에게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가 2012년부터 금년까지 2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도와 시·군이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이룩한 큰 성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초부터 각종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055)211-4674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

▶ 기관표창 및 1억 3천만 원 시상금 수여

경남도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평가에 이어 2013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실태 평가에서도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과 함께 1억 3천만 원의 시상금으로 받는다.

이는 경남도가 인명피해 ZERO화 실현을 위하여 우기철이 도래하기 전 시기인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사전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재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 방재물자 및 장비 확보·비축, 재난예방 교육홍보,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번 평가는 11월 18부터 22일까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5개 분야 59개 재난관리 실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우수한 결과는 기관장의 관심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노력한 결실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지적인 자연재난의 빈틈 없는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등 재해예방대책사업 56개소에 1,084억 원을 조기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도내 전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방재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치수방재과 복구지원담당
(055)211-4194



도민행복주택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 12월 13일 제2호 도민행복주택 준공



<도민행복주택 명패 개막식>

제2호 도민행복주택이 탄생했다.

경남도는 12월 13일 오전 다문화가정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김흥수 씨 댁에서 윤한홍 행정부지사, 태영건설 이장희 상무, 한림건설 김의수 사장, LH공사 경남지역본부 이효권 경영지원부장, 어린이재단 이종화 경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행복주택 제2호 준공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올해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9월 28일 착공하여 수세식화장실, 단열창호, 도배, 씩크대, 전기공사 등 주택 내·외부를 전면 리모델링했으며, '도민행복주택 제2호'가 새겨준 명패를 대문 옆에 부착을 했다.

제2호 주택은 태영건설과 한림건설에서 3천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LH공사에서는 3백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증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은 휴일에 리모델링 공사 자원봉사를 했다.

지금까지 지자체나 민간주도로 추진한 유사 사례는 있었지만 행정과 주택건설업체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자원봉사에서부터 주택리모델링을 One stop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치매가 있는 노모를 모시고 다문화가정의 가장역할을 맡고 있는 김흥수 씨는 “경남도, 태영건설, 한림건설, LH공사, 어린이재단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 드리며, 올 겨울이 예년 겨울에 비해 길고 춥다고 하는데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 너무나 좋다”며,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아내가 더욱 더 기뻐해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다문화가정에 도민행복주택 제2호를 준공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업체와 유관기관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사전>



<공사후>

■ 자료 : 도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211-4413

가야문화권 특정지역에 아라가야의 중심지 함안군 포함

▶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에 4개 사업추가, 1개사업 변경 등 국비 804억 원 추가확보

경남도는 12월 9일 승인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에 기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에 아라가야의 고도인 함안군이 추가로 포함되고, 합천군 황매산연결도로사업의 터널 신설로 인한 증액사업비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변경지정으로 도내 거창, 합천, 창녕, 의령, 함안과 경북, 대구를 포함하여 총 3개 시·도, 8개 군에 역사문화, 지역관광, 도로 기반시설 등의 3개 분야, 38개 사업에 사업비 804억 원이 증액되어 총 9,0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에 추가된 도내 세부사업으로는, 추가 지정된 함안군의 경우 ▲역사문화자원인 말미산고분정비에 439억 원 ▲지역관광자원인 범수 생태자연휴 조성 108억 원 ▲여항산 자연체험단지 31억 원 ▲도로 기반시설인 여항산 자연체험로 연결도로 38억 원 ▲아라가야 역사도로 104억 원 등 총 720억 원이다.

또한, 이번에 개발계획이 변경된 합천군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84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 합천군 가회면 월계리 ~ 쌍백면 삼리까지 L=8.3km, B=8.0m, 터널 390m, 교량 5개소를 총사업비 334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도에 착공하여 2019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지현철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이번 가야문화권의 추가(변경)지정으로 국토균형 발전을 기대하며, 역사문화 및 지역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균형발전단 지역개발담당
(055)211-6433

20세기 폭스사 엔터테인먼트 총괄부사장 테마파크 예정지 방문

▶ 12월 20일 오후 웅동 현장 방문, 내년 초 투자여부 결정, 투자 가능성 시사



20세기 폭스사 엔터테인먼트 총괄부사장 Gregory Lombardo가 12월 20(금) 오후 4시 웅동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예정지를 방문, 테마파크 조성계획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홍준표 경남도지사, 정판용 도의원, 배종량 도의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직접 웅동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을 안내하는 등 이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Gregory Lombardo 부사장 방문은 지난 10월 미국 투자유치활동 시 FOX 사장단이 웅동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투자환경 조사차 꼭 경남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처럼 폭스사가 한국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문화를 접목한 폭스사의 콘텐츠와 한국의 IT기술의 우수성을 합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홍준표 도지사가 직접 투자유치활동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투자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Gregory Lombardo 부사장은 “현장실사 내용을 기초로 투자분석을 거쳐 내년 초에는 웅동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투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폭스사가 투자를 한다면 콘텐츠 제공뿐만 아니라 직접투자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세기 폭스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위치한 겐팅하일랜드 리조트 내 25에이커(10헥타르) 부지에 1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FOX테마파크를 2016년 개장 목표로 추진 중이다.

■ 자료 : 도 투자유치단 해외기업담당
(055)211-3143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에 날개 단다

▶ 12월 23일 도청에서 경남도-나노기업·연구기관, MOU 체결

경남도는 12월 23일 오전 11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엄용수 밀양시장, 김호용 한국전기연구원장, 강석봉 재료연구소장, 류병현 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를 비롯한 7개 나노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관련 투자유치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나노기업들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916,300㎡의 산업용지에 나노융합산업 공장건립을 위해 총 6,57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도내 거주자 위주로 총 3,6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한국전기연구원과 재료연구소는 나노기반 연구개발 수행 및 사업화 지원, 국가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경남도와 밀양시는 이를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담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체결식에서 “경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나노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 지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정 이후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이번 협약체결은 우리 경남을 나노융합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에는 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40개 회원사) 외에도 (주)한국카본, (주)상진미크론, (주)플라텍, (주)화영, 아이엔테크(주), (주)일성테크 등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과 재료연구소가 참여하여 경남 나노융합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 주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연평균 18.2% 수준으로 급성장하는 세계 나노융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집중육성이 필요하며, 향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나노산업 집적화를 통해 국가경제 2만 달러 트랩 돌파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가산단이 조성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료 : 도 성장동력과 나노융합담당
(055)211-2743

국내 최초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첫 삽'

- ▶ 잠수함 및 전기선박 추진체계 육상시험 및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
- ▶ 시장 창출 1조 4840억 원, 일자리창출 400여명 기대효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창원에 조성되는 잠수함 등 '전기선박 육상시험소'가 드디어 첫 삽을 떴다.



한국전기연구원은 18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전기연 본원 앞에 들어서 있는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부지(성산구 불모산로 10번길 12)에서 박완수 창원시장, 김호용 한국전기연구원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 신정호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박동혁 대우조선 해양 부사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대우해양조선, 시험설비 제작사 등 사업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전기선박 육상시험소는 창원시가 제공한 2만 617㎡ 부지에 국비 641억 원, 도비 30억 원 등 총 671억 원이 투입되어 건축연면적 6398㎡에 육상시험동(3705㎡), 전기선박연구동(1892㎡), 전기추진시험동(801㎡) 등 잠수함과 전기추진 구축함 등의 시험 및 연구시설 등을 갖추고 내년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향후 대부분의 선박이 전기추진 선박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 해상방위의 첨병인 잠수함 '장보고-III'의 국산화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산 잠수함 개발을 위한 전기추진체계의 육상통합 성능시험설비의 필요성과 더불어 고부가 전기추진선박의 핵심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지원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이날 기공식 축사를 통해 "전기선박 육상시험소는 국내 유일의 잠수함 관련 연구시험시설로, 우리시가 관련 산업을 선점하고 연구생산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전기선박 육상시험사업과 더불어 차세대 전기추진 고부가 선박 연구개발이 병행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전기선박 육상시험소가 조성되면, 향후 20년간 본사업 640억원 이외에 군수·민수분야 등 총 1조4840억 원의 사업효과와 4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업과 관련된 지역 완성부품 납품업체와 선박부품 제조기업 등이 참여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이외에도 해외 설계·자문사, 해군 현지 훈련이 상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선박 육상시험소'는 잠수함과 전기추진 구축함용 개발장비를 함정 탑재 전에 육상에서 통합 시험하는 시설로, 잠수함 추진체계 주요장비의 통합성능 사전확인, 운용 시나리오별 운전 성능 확인, 기술적 위험요소 사전 식별 및 대책 수립 후 탑재 전 보완, 고장 및 비상상황에 대한 시험수행을 담당하게 되며, 세계적으로 영국과 미국 단 2개국만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창원 조성되면 우리나라가 3번째 보유국이 된다.

■ 자료 : 창원시 기업사랑과
(055)225-4614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공사 “착착” 진행

- ▶ 시험생산동 내년 1월 준공, 연구지원동 2014년말 준공 예정
- ▶ 금형·소성가공 동남권 뿌리산업 컨크롤타워 역할 담당

진주시는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정촌일반산업단지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부지 내에서 기공식을 개최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동남권 뿌리산업 생산거점화를위해 본격적인 닻을 내린 이후, 12월 현재 34%의 진척률을 보이면서 건물 외관 구조물이 형성되는 등 조금씩 웅장한 모습을 들어내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2014년 센터가 완공되면 미래 50년 신성장 동력산업 먹거리 사업을 지원하게 될 브레인 침병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에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항공·조선·자동차 등 연관 기업 유치와 금형·소성가공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동남권 뿌리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1만8537㎡의 부지에 연면적 8,543㎡의 규모로 총사업비 국도비 포함 405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4개동이 건립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는 시험 생산동을 완공하고 기계장비설비는 선 투입, 가동 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연구지원동도 2014년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센터 건립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가 완공되고 그 배후단지인 금형(뿌리)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명실상부한 금형, 소성가공 뿌리산업의 허브도시로 성장하여 도내 주력산업 고도화의 주도적인 역할과 국내 제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료 : 진주시 산단조성지원과
(055)749-5428

(주)한국화이바, 함양일반산업단지 2014년 본격가동

(주)한국화이바는 2004년 11월 15일 원평농공단지 13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유리섬유관 생산공장을 건립키로 함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을 한 후, 500여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농공단지 개발사업 2년 만에 250여명을 고용하고,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다.

농공단지 개발협약 이후 2005년 12월에는 연접한 부지에 약 30만평의 일반산업단지를 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약 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함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었다.

당시에는 (주)한국화이바는 2012년 말까지 산업단지개발을 준공하여 저상버스, 경전철, 틸팅열차 등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며, 2007년 2월 경상남도로부터 산업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고, 준비절차를 거쳐 그해 10월 본격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착수하였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착공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친환경, 연료저감형 차량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변화(축소) 등으로 관련 업종의 성장이 부진하게 되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도 어려움을 겪어 한차례의 조성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투자가 지연되어왔으며, 한편에는 (주)한국화이바의 공장 전부가 밀양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투자를 지연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였다.

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함양산업단지에 설립하기로 한 틸팅열차, 저상버스, 첨단 항공소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실행해오고 있었으며, 특히, 전기버스는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과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함양산업단지와 밀양공장에서 생산라인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일본, 칠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에 영업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었으며, 현재 월 12대의 전기 버스를 생산하여 국내 판매 및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다.

최근 전기버스에 대한 해외수주의 꾸준한 증가로 밀양의 생산라인 및 완성차 야적장이 협소하여 개발중인 함양일반산업단지로 전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약 16억원 사업비로 150여명의 사원의 기숙생활이 가능한 지상 4층 규모의 기숙사 건축공사를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기초공사는 마쳤으며, 밀양에 있는 버스사업부의 공장 및 설비 등은 내년 5~6월 이전을 시작하여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잔여부지에는 버스 관련 부품공장을 2015년 말까지 준공하기로 확정하였다.



함양군(군수 임창호)은 (주)한국화이바의 버스사업부의 확장 이전을 계기로 그간 지연되었던 함양일반산업단지 개발이 가속화되고, 2014년 말까지 공장의 확장이전이 완료되면 150여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화이바 그룹의 함양공장에 고용인원은 500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함양의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낙후된 서부경남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원평농공단지와 함양일반산업단지에 (주)한국화이바와 계열사인 (주)한국카본이 약 250여명과 5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함양에서의 매출액은 700억원과 300억원에 달하며, (주)한국카본 또한 농공단지의 잔여부지에 생산공장 확장을 위한 600평의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등 왕성한 조업활동을 보이고 있다.

■ 자료 : 함양군 기획감사실
(055)960-5104

의령군, 2014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66동 추진



의령군은 내년에 국비 포함 3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66동의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내년에는 군비만 지원하는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올해까지 동당 3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철거 지원비 부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5백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부터 경남도내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한 의령군은 올해까지 7년 동안 717동의 지붕개량을 지원하면서 녹색과 주황색 계통의 산뜻하고 밝은 색상으로 개량하도록 지도해 왔으며, 그 결과 농촌마을 경관이 깨끗하고 밝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지붕개량 희망자는 다음달 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득수준과 주택노후도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내년 1월말 사업이 조기 발주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 마련이 쉽지 않은 농가에 철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

으로써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의령군 대민봉사관
(055)570-2253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취임 1년 돌아본다

- ▶ 12월 19일 도지사 취임 1년가 공약·지시 사항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
- ▶ 공약 48건 중 완료 5건, 정상추진 43건 등 '홍준표 호' 순항 중!

경남도는 12월 19일(목) 오전 9시 도청 본관 도정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준표 도지사 주재로 '제35대 도지사 취임 1년간 공약·지시사항 추진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취임 1년간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과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금년 3월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확정된 공약 48건과 작년 12월 도지사 취임 이후 올해 11월까지의 지시사항 96건에 대해 실·국별 자체평가를 토대로 종합평가해 공약은 5건, 지시사항은 51건이 각각 완료되었고, 그 외 사항들은 모두 정상추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지나온 1년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도정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공약사항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며, “빈틈 없는 공약이행을 위해서 중앙부처의 행·재정적 지원 및 자원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성과로는 채무 조기상환 등을 통한 도 재정건전성 강화, 도내 24개 기업·기관과 도내 대학생 우선 채용 협약 체결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기업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특히,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협약 체결을 통해 2조 6,789억 원의 재정절감과 함께 2013년 재정점검종합계획에 의한 세출구조조정으로 35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도 미래성장동력 확충 사업에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올 4월 주요 공약사항인 항공, 해양플랜트, 나노융합산업이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의 미래창조산업입지로 선정되었으며, 친환경 농업 벨트, 수출양식단지 조성 등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선진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금번 LA한인축제기간 중 2012년 전국 대미 수출액 6억 6천만 달러의 16%에 해당하는 1억 3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남은행 조기 민영화를 위한 108만 명 지역환원 서명운동 전개, 마산로봇랜드 착공,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다문화체험 교육센터 개관 등 '당당한 경남시대' 구현을 위해 공약·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신뢰 받는 도정이 되기 위해 공약사항 분기별 추진상황을 도 홈페이지-‘공약과 실천’란에 게재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정책기획관실 정책개발평가담당 (055)211-2326



새해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지역균형발전 추진한다.

- ▶ 서부청사 건립, 지역균형발전 등 가시화

경상남도는 지역 간의 고른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2014년에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는 지난 3월 28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선도할 조직으로 서부권개발본부를 신설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래 50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대표적인 정책이다. 경남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서부지역의 항공산업, 동부지역의 나노융합산업, 남부지역의 해양플랜트산업과 같이 시군별로 특화된 미래 전략사업을 배치하고 육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동남부 중심의 편중된 발전전략 추진에 따라 발생한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새로운 반세기기를 준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11일 진주시 유치가 확정된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는 이달 9일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 그 동안 서부지역 도민들이 겪은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진주혁신도시에는 올 2월에 중앙관세분석소가 업무를 개시하였고, 연말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준공되는 등 혁신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남해안과 내륙을 연결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기반시설인 남부내륙철도는 지난 11월 19일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조기 착수가 가시화 되었다.

시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도비를 차등지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낙후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에는 특별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서부청사 건립은 지난 9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2014년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18건의 광특사업과 4건의 도비사업에 대해 국비 등 313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최근 간부회의에서 영화관이 없는 군지역에 주말영화관을 설치하라는 홍준표 도지사의 지시에서 보듯 경남도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문화 복지 등 생활여건을 개선할 방법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서부청사의 건립이 가시화되고, 진주부흥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는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자료 : 도 균형발전단 균형정책담당
(055)211-6413



조선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마련

▶ 2020년까지 1조 5천억원 투입,
2020년 세계 1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강국유지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산업집적도와 미래발전 가능성, 지역균형개발 글로벌 산업발전 트렌드와의 부합성 등 여러 분야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6대 산업(조선해양플랜트, 지능형기계시스템, 항공우주, 첨단나노융합, 기계융합소재, 항노화바이오)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산업별로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였다.

경남도가 이번에 발표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에는 산업전환기(조선 → 해양플랜트) 도래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통한 2020년 세계 1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강국 유지라는 비전과 함께 2020년 해양플랜트 및 선박 수출 2배 증대('12년 252억불 ⇒ '20년 519억불),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 60% 달성('12년 20% ⇒ '20년 60%), 해양레저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경남은 국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명실상부한 거점지역('13년 상반기 기준 전국 조선해양산업 생산액의 49.4% 차지)으로 국내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지역 중소 조선업체는 높은 시장진입 장벽과 전문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글로벌 산업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남도는 그동안 조선에서 축적된 우수한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플랜트산업으로의 융복합화를 꾀한다는 계획을 세워 지속 가능한 산업성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 산업고도화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육성, 글로벌 마케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선박건조중심의 조선산업에서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전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플랜트 생산·연구단지 조성사업의 국가정책사업 반영 및 설계·엔지니어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 인증센터 운영시스템 체계화, 고성 조선해양특구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앞으로, 경남도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조선기자재업체의 해양플랜트산업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통해 2020년 세계 1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강국유지 비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주요제품 >

■ 자료 : 도 성장동력과 조선해양담당 (055)211-2732



'14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 기초공사, 미장공사 등 166개 항목 정비

국토교통부는 '14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금년에는 총 183개 항목(상반기 17, 하반기 166)이 정비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품셈 항목수 :

2,482개 항목('13년)→2,454개 항목('14년)

① 먼저, 기초공사의 기계화 시공 등 현장시공 상태를 반영하여 공법별 작업능력 및 투입 품을 현실화 하였다.

지질 및 현장시공 여건이 다양한 기초공사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공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토질 분류기준을 토사,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의 5개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토질별 천공 장비인 크롤러드릴의 작업능력을 현실화하고, 보강재의 공장가공 상태 반영, 그라우팅 및 인장 작업의 기계경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품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기초공사의 H-beam 설치·철거, 토류판 설치, 기초 뒷채우기, 암반청소 등의 품과 기준을 개정하였다.

H-beam 설치·철거를 현장시공 절차를 고려하여 띠장과 버팀보로 분리하여 제시하였으며, 기초 뒷채우기의 대형장비 적용실태, 고압살수에 의한 암반청소 수행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한 품 개정을 수행함으로써 그동안 해당 공법(공종)의 품과 기준이 불분명하여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아울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에서 현장제작보다는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의 현장적용이 증대되고 있는 시공실태를 반영하였다.

현행 품셈이 현장에서 원재료를 직접 가공하는 품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품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창호·유리공사, 배관보온공사에서 현재 보편화 되어있는 기성제품의 현장적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예정가격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모르타르 기계바름을 위한 대형장비 신설, 발포 충전제에 의한 창문틀 주위 충전, 고무발포 보온재에 의한 보온 등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에 따른 신규 항목을 제정함으로써 품질확보는 물론 예정가격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1



건설공사대금 체불, 불공정 해소센터가 해결

▶ 지난 7~11월간 체불 하도급대금 60억 원 지급토록 조치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8일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공사에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운영결과를 발표하였다.

7~11월간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신고된 117건을 접수하여 65건을 처리하였고, 13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39건은 취하하거나 공정위에 이송하였다.

특히, 117건 중 하도급대금 등 대금미지급에 대한 건은 58건으로 이 중 24건 60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월 평균 23건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6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국토부는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관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된 사안을 직접 조사·해결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가 해결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대금 관련 》

하도급업체 A사는 창원시 소재 아파트 부지조성 공사를 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하도급대금(18억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센터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는 설계변경계약을 하였으나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은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와 업체 대표를 면담하여 A씨가 대금을 지급받음

근로자 B씨는 ‘12.10~’13.4 동안 천안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했는데 건설업체가 노무비(550만원)를 지급하지 않아 센터에 신고하였고 센터는 사실 조사를 진행하여 건설업체가 B씨에게 노무비 지급

포크레인으로 경남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C씨는 건설업체가 장비대금(500만원)을 주지 않아 센터에 신고했는데, C씨가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센터가 건설업체에 C씨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노력으로 C씨는 장비대금을 지급받아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음

《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련 》

양주시 △△관로 이설공사에서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혐의를 해소센터가 신고를 받고 사실 조사한 결과 발주자 승인을 받지 않은 동일업종 간 하도급*으로 확인되어 지자체 통보

함평군 농촌마을 연결도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센터가 하도급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하여 지자체 통보

천안시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공원화 조성공사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 포기 강요, 추가 공사비 미지급, 현장관리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센터가 조사하여 지자체 통보

지자체에 통보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가 생기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해소센터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사라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04

신규 국책사업, 유사사업 사후평가자료 활용해야

▶ 검증 강화 등 사후평가 개선... 300~500억 원 사업에는 간이평가

현재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평가를 확대하여 300억~500억 원 규모 사업에도 간이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사후평가 시 수요예측 오차 발생의 원인 분석이 쉽도록 검증 체크리스트를 개발, 보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후평가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해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 및 공사비 증가율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신규 유사사업 시행 시 사후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며,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② 도로 등 구간별로 추진되는 공사는 수요가 발현되는 전체사업 완료 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점을 개선하며, 사후평가 시행효과가 낮은 주택·기숙사·교육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③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 확립을 위해 사후평가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사후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④ 국내 공공건설사업 비교분석을 위한 충분한 DB 구축을 위해 총공사비 300~500억 공사(연 70건 이상)도 간이평가를 실시한다.

⑤ 사후평가 결과를 도로·철도·항만 등 시설물 단위로 분석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생산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 마련으로 SOC 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공공사업비 절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대책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을 실시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3

국토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부적격 혐의업체 6,161개사 적발

▶ 범위반 최종 확인시 영업정지,
등록말소 처분예정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13.5.2~'13.11.30까지 총 25,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 6,161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5,267건(82.2%),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0%)이며, 기타 자료 미제출은 799건(12.5%)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11년 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자본금 미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업체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 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아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 등록관청인 230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서류 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앞으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군·구청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및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시)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04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

▶ 발행위 허가기준 구체화...사업규모·토지 용도 따라 차등화

1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확보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도시 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토 및 성토 기준을 차등화하며, 환경 및 경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서 적정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경관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산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별 입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된다.

또한, 절토·성토 등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차등화되며, 비탈면높이 5m 마다 1m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구거가 접하는 경우 그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하였으며, 물건적치 높이는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적치장소가 8m 이상의 도로 및 철도부지에 접하는 경우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만큼을 이격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방지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도서작성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작성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6



어린이 체험시설 ‘산청읍수원’ 한옥 대상 수상

▶ 제3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고유가치+ 현대적 디자인 접목 평가

제3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어린이 교육 및 체험시설인 산청읍수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을 20일 오후 2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 건축 부문, 한옥계획 부문, 한옥사진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심사 결과 건축 부문 3개, 계획 부문 18개, 사진 부문 44개 작품이 당선되었다.



<산청 읍수원 전경>

영예의 1위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건축 부문에서는 주)재능교육이 어린이 교육 및 체험 시설로 건립한 「산청읍수원」이 수상했다.

계획 부문에서는 한옥단지에서 쇠퇴되어가는 마당을 현대적 공간 기능으로 수용 설계한 「잠원」이 수상했다.

사진 부문에서는 한옥의 담장길을 정감 있게 표현한 「토담길의 한옥」이 선정되었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이왕기 목원대 건축학부 교수)은 “건축·계획 부문의 경우 한옥 고유의 가치와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잘 접목시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통해 한옥의 가능성을 표현한 작품을 선정했으며, 사진 부문에서는 한옥의 멋과 일상을 독창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한옥 공모전은 우리나라 전통의 건축자산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고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한편,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한옥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공모한 결과(11.11~11.14) 한옥건축 부문 9점, 한옥계획 부문 131점, 한옥사진 부문 483점 등 총 623점이 출품되었다.

특히, 건축 부문의 경우 일반기업체에서 한옥을 교육·체험시설로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등 한옥이 점차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녹아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공모전이 한옥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한옥의 가치와 의미가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저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7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이제 그만!!!

▶ 국토부, 지역개발제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발표

◆ 관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은 **지지부진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진입도로에 우선 투자**되는 사례는 전면 **차단**된다!

◆ 실현가능성 없는 **장기 미착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을 12월 19일(목)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5종의 지역개발제도별로 개발계획 및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와 집행평가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역개발제도 (3개 법률 5종) >

- *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 *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 *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동서남해안 개발구역



1 (개발계획 승인단계)

기존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 개선

지역·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비현실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입지적합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는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의 평가대상을 현행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개발사업의 기본적 필수요건만을 가지고 평가여부를 확인하는 “PASS/FAIL 방식”을 도입하고, 중복되거나 사전 검증이 어려운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간소화하는 등 평가방식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2 (개발계획 운영단계)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운영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변여건 변화를 적기 반영하지 못하고 미착수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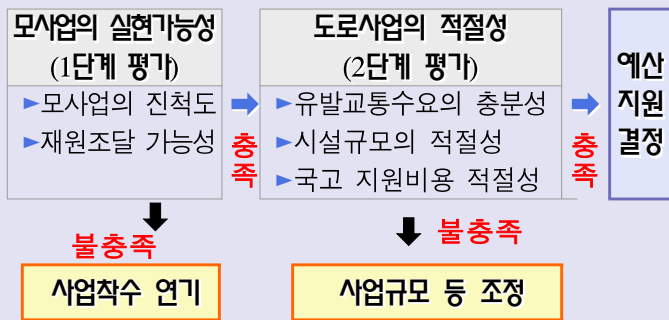
평가방식은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 착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정상, 지연, 부진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신호등 점검방식으로 표시·공개함으로써 개발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지자체의 자발적 책임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3 (개별사업 예산지원 결정단계)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도입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국토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사업과 관광단지 조성 등 모(母)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전에 기반시설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규모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가 도입된다.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모사업의 진척 정도와 상관없이 기반시설이 착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사업의 실현가능성을 1차적으로 고려하여 기반시설 사업의 착수여부를 결정하고, 모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기반시설 규모의 과다여부를 평가하여 예상교통수요 등을 감안한 적절한 기반시설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2단계 평가방식으로 운영된다.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방식 및 활용 】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 사업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시설규모가 과다한 경우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개발계획 포함된 사업 제척을 위한 평가가 아니다”고 밝히면서 ,

“따라서, B/C분석과 같은 경제성 위주의 분석을 통해 사업 제척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도입목적에서부터 상이한 제도” 라고 덧붙였다.

4 (개별사업 시행 단계)

컨설팅형 집행평가로 개편

기반시설의 예산집행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집행평가는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갈등조정 절차운영, 자원확보 노력, 전담조직 운영 등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지원단*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계가 운영됨에 따라 국토의 과도한 개발을 차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인 “실현가능성 검증”은 '12년부터 도입되어 금년까지 운영한 결과, 총 140개 사업을 검증하여 74개 사업이 제척·조정되었고 약 1조 2천억원 상당의 과잉투자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는 과도한 개발에 대한 국토부의 자정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044)201-366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제2013-808호)**

1. 적용기준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적용요율

공사 규모		요율
50억원 미만		0.081%
50억원~100억원 미만		0.080%
100억원~300억원미만		0.075%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6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턴카대안공사		0.084%

-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에정금액을 말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19일까지로 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개정 고시 (제2013-516호)

□ 현황

- 공공공사 발주 시 일정규모 이상 대형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중
 - (대상업체) 토건 시평액 1,200억원 이상인 업체
 - (대상공사) 국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토건·토목·건축공사
 - (하한금액) 해당업체 시평액의 1/100(하한금액 이하 공사를 제한)

□ 현행 및 개선안 비교

○ 대상업체 및 대상공사

업종		토건	토목	건축
대상업체	현행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 이상	-	-
	개선	"	좌동	좌동
대상공사	현행	0	0	0
	개선 ¹⁾	0	0	0

업종		산업·환경설비	조경
대상업체	현행	-	-
	개선	시공능력평가액 41,000억원 이상	시공능력평가액 1,800억원 이상
대상공사	현행	/	/
	개선 ¹⁾	0	0

1) 다만, 대상공사는 WTO GPA에 따른 기재부·안행부의 고시금액('13년 기준, 국가공사 87억원, 지자체·공기업 등 발주공사 262억원) 미만인 공사에 한함

○ 하한금액 : 시평액의 1/100로 현행을 유지하되,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사에 대해서는 하한금액의 상한선을 아래와 같이 설정

업종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현행	200억원	/	/	/	/
개선	200억원	200억원	200억원	180억원	20억원

□ 시행일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진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공포·시행('14.1.5.)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201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시 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것이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되고, 사업주체와 입주민 등이 이 기준을 통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하자처리에 대한 의견대립 및 갈등발생 여지를 줄여 신속한 타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 (하자의 조사방법)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하여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

○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방법 제시

○ (하자판정기준)
-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

-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

-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 다만,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 등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3. 12. 10.(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22호)
- 예고기간 : 2013. 12. 10. ~ 2014. 1. 2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을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한 공장·창고 등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샌드위치 패널 사용 건축물의 화재피해를 줄이고자 창고의 경우 난연성 자재 사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고의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대상 기준 개정(안 제61조제1항제7호 개정)

1) 바닥면적 1천㎡(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의 경우 3천㎡) 마다 내화구조 벽으로 된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있으나, 3천㎡ 미만의 창고의 경우 벽체를 비난연성 자재로 시공하고 있어 방화구획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대상을 조정(3천㎡→6백㎡,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의 경우 6천㎡→1천2백㎡)

2) 다만,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복합자재 벽체 및 지붕 중간에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복합자재의 심재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벽체·지붕에 일정 간격(가로, 세로)마다 일정크기의 난연성 재료로 된 구조 등

나. 복합자재 사용 유도 표현 규정의 개정(안 제61조제1항제4호다목 개정)

1) 소규모 공장 중 난연성 마감자재 설치 제외 대상을 정하면서 일정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를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이라고 복합자재 사용을 유도 표현한 것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공장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에 난연자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을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한 공장·창고 등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난연성 자재 사용 대상 임에도 난연 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공사감리자 등이 건축재료의 적합여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건축재료 조사 내용에 복합자재 항목을 신설하여 감리자 또는 검사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리보고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 보완

(별지 제21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감리보고서 서식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식의 건축재료 조사 내용에 복합자재 사용 항목을 각각 추가하여 사용승인 시 감리자 또는 검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5, 팩스 044-201-5574)

■ 자료 : 법제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입법예고일 : 2013. 12. 2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67호)
- 예고기간 : 2013. 12. 24. ~ 2014. 2. 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전자입찰 및 전자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세부 허용기준과 안전진단 실시기관 지정, 전자투표제의 방법과 절차,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사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부허용기준 등(안 제4조의2, 제47조의2 신설)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되,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며,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요건(안 제14조의2 신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기술 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리모델링 안전진단 실시기관 등 안전관련 절차보완(안 제47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관으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규정하고, 허가 전 안전진단 실시를 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허가 후 실시하는 안전진단 참여를 일부 제한하고, 안전성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는 등 안전진단 실시기관 및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함.

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대상 제외 등(안 제47조의5 신설)

리모델링 일시집중 등의 우려가 적은 경우 특별시·광역시·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도시는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항목으로 경관관리방안,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함.

마.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사항 등(안 제52조의2 신설)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을 규정하고, 양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결정사항 별로 정해진 공급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결정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바.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 등(안 제56조의2 신설)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및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며, 그 절차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투표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사. 회계감사 규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규정(안 별표13 개정)

외부 회계감사 및 회계서류 보관 등이 의무화되고 과태료 규정이 주택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위반횟수별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함.

아. 그 밖에 개정사항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 위탁 또는 대행 시 사업자 선정주체 변경, 주민운동시설 외부 위탁요건 완화, 층간소음 종류 규정,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관련 규정 정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규정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가. 리모델링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대상(안 제13조의2 신설)

철거 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기술사의 협력사항을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주요 구조부에 대한 철거범위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요 구조부재의 시공방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함.

나.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및 리모델링 시기조정 방법(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 1)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구조안전성에 대한 상세확인 결과 및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기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등에 관한 조치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다. 관리사무소장의 교육강화 및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 제26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신설)

- 1) 관리사무소장은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시기를 조정함.
- 2)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 이유와 필요성 등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방법을 규정함.

□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70, 팩스 044-201-5684)

■ 자료 : 법제처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외에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회 답(2013.12.16.)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외에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유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 및 제32조제1항의 문언을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 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전주지법 2012. 4. 3. 선고 2012구합185 판결례 참조).

또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데, 시설물을 지배하여 그 효용을 누리는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로 인하여 그 이용자나 일반 공중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하여 그가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면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하여금 시설물 이용자나 일반 공중의 편의를 증진하게 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자료 : 법제처**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회 답(2013.12.16.)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에서 당연히 제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 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건축물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당 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반면,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제도는 일정한 높이나 면적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구조안전확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이라도 건축물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법령상 명백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문언 체계와 구조안전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 구조안전확인 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와 충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웅진고분자(주) 동부엔지니어링(주)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14호
- 기술분류 : 토목/상하수도/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 내용요약

파손된 하수관거의 부분보수시공이 요구되는 소형, 중·대형의 모든 하수관거에 파손, 균열, 부식, 어긋남, 이완, 이음부, 분기부, 단차부 등에 발생된 불량 및 결함부위에 지수재인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 : 변성아크릴계 수지)와 카메라 로봇과 다기능성 무보강 충전 지수용 굴절식 팩커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량과 결함부위에 지수재를 주입 및 충전하여 관경 내벽·외벽부(토양)를 동시에 수지 겔(Gel) 및 모래 겔(Sand-Gel), 토양 겔(Soil-Gel) 층을 만들어 보수 및 보강시공이 동시에 가능하게 한 기술로 2차적 환경오염방지와 불명수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수처리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수충진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중에 매설된 하수관거 직경(D)150~800mm 폴리에틸렌관, 철근콘크리트관, PVC관, 주철관, 파형강관의 부분 파손과 직선부, 분기부, 이음부, 단차부에 대한 비굴착 부분 보수기술로서, 지수재인 저점도 UDRS수지(MSA-100형)와 충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하여 주입, 충전, 경화(Gel, Sand-Gel, Soil-Gel)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수 충전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

각형강관 및 FC플레이트 압입 후 본 구조를 추진/견인에 의해 굴착작업 없이 지반을 치환하는 비개착 지하구조물 시공방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독수건설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16호
- 기술분류 : 토질/토질및기초/토목지중구조물
- 내용요약

추진 또는 견인 하려는 구조물의 외주면을 따라 지반에 압입된 각형강관들에 의해 사각형의 지지 구조체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 구조체를 추진 또는 견인하여 지반 굴착작업 없이 사각형 지지 구조체 내부의 지반을 콘크리트 구조체로 치환하는 경제적인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법, 콘크리트 구조체의 추진 또는 견인 시에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형강관의 압입시에 지반과 강관을 절연시키는 FC플레이트(Friction-Cut plate)를 동시시공하며, 사각형 지지 구조체 내부를 흙막이 시공하여 유압잭에 의해 콘크리트 구조체의 추진 또는 견인으로 흙막이 시공된 내부 토사를 굴착작업 없이 구조체로 치환할 수 있는 특징, 추진 또는 견인 시에 지지 구조체를 구성하였던 각형강관을 전량 회수할 수 있는 기술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하구조물의 외주면을 따라 전량 회수가 가능한 각형강관들에 의해 지반보강 후 유압잭으로 추진 또는 견인되는 지하구조물에 의해 FC플레이트로 절연된 각형강관 지지 구조체와 지지 구조체 내부의 지반을 굴착작업 없이 치환할 수 있는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제13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실시설계 적정성 1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3건
- 심의일자 : 2013. 12. 18.(수)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심의결과
2013-13-01	실시설계 (적정성)	이책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일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2.33km, · 사 업 비 : 169억원(공사비134, 보상비등35) · 사업기간 : 2013 ~ 2015년 	합천군 (건설방재과)	조건부 적격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3-13-02	금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하동군	조건부 적격
2013-13-03	통영시 체육시설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통영시	조건부 적격
2013-13-04	당항포관광지 수변공원조성 및 중심지역 편의시설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성군	조건부 적격

2014년 제1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3건
- 심의일자 : 2014. 1. 16.(목)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2014-1-01	거창군 도시개발분야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거창군
2014-1-02	창녕군 국토개발계획(도시계획) 분야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녕군
2014-1-03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원시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4625

계약심사 현황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3년 12월	계		81	150,875	141,957	8,918	5.91%
	공사	토목	37	97,162	90,625	6,537	6.73%
		건축	12	36,004	34,423	1,581	4.39%
		기타	10	9,957	9,375	582	5.85%
	용역		9	6,832	6,647	185	2.71%
물품		13	920	887	33	3.63%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팀당
(055)211-3548

나눔 정보

2014년 국가기술자자격 검정시행일정

회 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 문 제 출)	실기(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기술사	제102회	1.3~1.9	2.9	3.21	3.24~3.27	4.19~4.30	5.23
	제103회	4.4~4.10	5.11	6.27	6.30~7.3	7.26~8.8	8.22
	제104회	6.27~7.3	8.3	9.19	9.22~9.25	10.18~10.30	11.14
기사 (산업기사)	제1회	2.7~2.13	3.2	3.14	3.17~3.21 (3.18 제외)	4.19~5.2	5.30
	제2회	4.18~4.24	5.25	6.5	6.9~6.12	7.5~7.18	8.22
	제3회	7.25~7.31	8.17	8.29	9.1~9.4	10.4~10.17	11.14
	제4회	8.22~8.28	9.20	10.2	10.6~10.10 (10.9 제외)	11.1~11.14	12.12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l.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엄두 참고송입니다.